

서울특별시      광진구  
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 
조례를      다음과      같이  
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인

2015년 10월 30일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을 “회계연도 및 출납폐쇄”에서 “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. 다만,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,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.

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·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.

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주요항목”을 각각 “정책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0분의 5이하”를 “10분의 2 이하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10년”을 “10년(2020. 12. 31.)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5항 중 “ 5년”을 “5년(2020. 12. 31.)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가목 중 “자활공동체가”를 “자활기업이”로 하고,

같은 항 제2호 중 “자활공동체”를 “자활기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5년”을 “5년(2020. 12. 31.)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5조”를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5년”을 “5년(2019. 4. 17.)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5항 중 “5년”을 “5년(2020. 12. 31.)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5항 중 “5년”을 “5년(2020. 12. 31.)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2항제1호 중 “「도로법」 제76조”를 「도로법」 제91조“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5년”을 “5년(2020. 12. 31.)”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《신 · 구조문 대비표》

현행	개정안
<p><b>제6조(회계연도 및 출납폐쇄)</b></p> <p>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6조(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)</b></p> <p>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. 다만,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,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.</p> <p>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·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.</p>
<p><b>제12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</b></p> <p>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<u>주요항목</u>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<u>주요항목</u>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<u>주요항목</u> 지출금액의 <u>10분의 5이하</u>를 변경하거나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<u>주요항목</u>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<b>제12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</b></p> <p>① ----- <u>정책사업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 <u>정책사업</u> -----</p> <p>----- <u>정책사업</u> -----</p> <p>----- <u>10분의 2 이하</u> -----</p> <p>----- <u>정책사업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4조(기금운용성과 분석) ①</b> -----</p> <p>----- <u>안전행정부장관</u> -----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14조(기금운용성과 분석) ①</b> -----</p> <p>----- <u>행정자치부장관</u> -----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와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b>제15조(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·시설 건립기금)</b>            ① ~ ③ (생략)            ④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<u>10년</u>으로 한다.</p>	<p><b>제15조(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·시설 건립기금)</b>           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④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<u>10년(2020. 12. 31.)</u>으로 한다.</p>
<p><b>제17조(노인복지기금)</b>            ① ~ ④ (생략)            ⑤ 제1항의 기금 존속 기한은 <u>5년</u>으로 한다.</p>	<p><b>제17조(노인복지기금)</b>           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⑤ 제1항의 기금 존속 기한은 <u>5년(2020. 12. 31.)</u>으로 한다.</p>
<p><b>제18조(자활기금)</b>           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            1. <u>자활공동체가</u>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어 받은 자금의 이차차액 보전            2. <u>자활공동체</u>에 대한 사업자금 대어            3. (생략)            4. (생략)            가. <u>자활공동체가</u>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어 받는 채무            ④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<u>5년</u>으로 한다.</p>	<p><b>제18조(자활기금)</b>           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            1. <u>자활기업이</u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2. <u>자활기업</u>-----           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가. <u>자활기업이</u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④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<u>5년(2020. 12. 31.)</u>으로 한다.</p>
<p><b>제19조(여성발전기금)</b> ① 「<u>여성발전기본법</u>」 제5조에 따라,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한다.            ② (생략)            ③ (생략)            ④ 제1항의 기금 존속 기한은 <u>5년</u>으로 한다.</p>	<p><b>제19조(여성발전기금)</b> ① 「<u>양성평등기본법</u>」 제42조에 따라,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④ 제1항의 기금 존속 기한은 <u>5년(2019. 4. 17.)</u>으로 한다.</p>
<p><b>제20조(중소기업육성기금)</b>            ⑤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<u>5년</u>으로 한다.</p>	<p><b>제20조(중소기업육성기금)</b>            ⑤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<u>5년(2020. 12. 31.)</u>으로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b>제22조(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)</b>            ⑤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<u>5년</u>으로 한다.</p>	<p><b>제22조(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)</b>            ⑤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<u>5년(2020. 12. 31.)</u>으로 한다.</p>
<p><b>제24조(도로굴착복구기금)</b>           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           1. 「도로법」 제76조-----            ③ (생략)            ④ 제1항의 기금존속 기한은 <u>5년</u>으로 한다.</p>	<p><b>제24조(도로굴착복구기금)</b>            ②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1. 「도로법」 제91조-----           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④ 제1항의 기금존속 기한은 <u>5년(2020. 12. 31.)</u>으로 한다.</p>